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	<p>가구요건 배우자 나 부양자녀¹⁾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²⁾가 있거나, 30세 이상일 것 1)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2)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 *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</p> <p>소득요건 '17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< 기준금액* * 기준금액 : 단독가구 1,300만원, 홑벌이가구 2,100만원, 맞벌이가구 2,500만원</p> <p>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* 합계액 < 1억 4천만원 * 부동산, 전세금, 승용차, 예금 등('17.6.1. 기준)</p>
자녀장려금	<p>부양자녀가 있고, 부부 총소득 4천만원 ·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['18. 3월 중 생계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법)를 받은 경우 제외]</p>
공통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 ·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· 전문직 사업을 영위(배우자 포함) 하는 자가 아닐 것

상기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구	<p>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</p> <p>홑벌이가구 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</p> <p>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</p>
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·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· 이자·배당·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·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
재산	<p>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·유가증권</p>

근로 · 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

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.
반드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,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십시오!

재산요건

재산 1억 4천만원(자녀장려금은 2억원) 미만

- 예금 · 현금 등은 신청안내에 미반영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

증거자료 제출(필요시)

재산 증거 자료

- 실제전세금 < 간주전세금* →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
* 주택임차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세금(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)
- 분양권 · 입주권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
· 분양계약서 사본, 분양대금 등 납입 영수증 · 토지상환채권 · 주택상환사채 사본

소득요건

소득 1,300만원~2,500만원(자녀장려금 4,000만원) 미만

- 자영업자는 과세자료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 활용하여 소득검증 후 장려금 지급
- 소득검증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

증거자료 제출(필요시)

소득 증거 자료

- 신고소득과 다른 실제소득 입증시 → 아래 중 해당서류 제출
·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
·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확인서
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

감액 · 지급제외 · 환수

심사결과에 따라 감액, 지급제외 또는 환수될 수도 있음

-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→ 장려금 50% 지급
-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%까지 총당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 → 해당장려금의 90% 지급
-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→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
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

사업자 등록으로 사회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

- 건강보험 피부양자 →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증가
- 소득검증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